

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년 04월 11일(금), 마포구청장
-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: 2014년 04월 22일(화)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: 2014년 04월 22일(화)
- 제출근거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

2. 변경계획안

(단위 : 천원)

수입계획				지출계획			
항목	기정액	변경	증감	항목	기정액	변경	증감
합계	8,039,000	8,039,000	0	합계	8,039,000	8,039,000	0
이자수입	39,000	39,000	0	비용자성 사업비	0	8,039,000	8,039,000
기타수입	8,000,000	8,000,000	0	예치금	8,039,000	0	△8,039,000

가. 변경사유

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건립 사업이 지방재정 중앙투·용자사업 심사 결과, 조건부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존 예치금을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함

나. 변경내용

변경 전	변경 후
○ 예치금 8,039,000천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모 설계비 616,580천원 ○ 실시 설계비 924,870천원 ○ 시설비 6,497,550천원

3. 검토결과

-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은 (주)한국중부발전 지정기탁금 및 예금 이자를 재원으로 조성되며, 기금운용계획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,
- 2014.3.24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받은 2014년 제1차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,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사업이 조건부 통과되어 예치금 전액을 (8,039,000천원) 설계비 등 사업비로 변경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,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 기본계획안이 2014.4.21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
- 다만, 2015년부터 구비 등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건립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시비 지원금이 줄어들 경우 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《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사업비 현황 》

(단위 : 백만원)

합계	국비	시비	구비	발전소지원금
40,376	5,335	11,354	10,687	13,000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